

일본의 관세할당제도 운영현황

■ 관세할당제도

- 관세할당제도는 일정수량 이내의 수입품에 한하여 무세 또는 저세율(1차세율)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저가의 수입품 제공을 확보하는 한편, 이 일정수준을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세율(2차세율)의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제도임.
- 이 제도는 1961년도의 무역자유화로 국내산업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자유화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 채용된 것으로서 일정수량이내의 수입만 인정되는 수입수량제한과 비교하면 일정수량을 초과할지라도 2차세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름.
- WTO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관세할당제도에 대해서는 특정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음.

■ 관세할당제도 대상품목

- UR합의 이전부터 관세할당제도 대상인 품목 (종래품목, 6품목)
 옥수수, 네추럴 치즈, 맥아, 무당 코코아조제품, 토마토퓨레 및 토마토페이스트, 파인애플통조림)
- UR합의에 의해 관세할당제도 대상이 된 품목 (관세화 품목, 11품목)
 기타유제품, 탈지분유, 무당 연유, 유청 등, 버터 및 버터오일, 잡두, 전분·이눌린 및 전분조제품, 땅콩, 구약감자, 조제식용기름, 누에고치 및 생사
- 매년 1회로 관세할당수량을 정하고 있으나 4품목에 대해서는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누어 수량이 정해지고 있음.
 * 4품목 : 옥수수(단일 사료용 이외), 맥아, 잡두, 전분·이눌린 및 전분조제품

■ 2015년도 일본의 농산물 관세할당 수량

(단위: 톤)

1. UR합의 이전부터 관세할당제도 대상인 품목 (종래품목)

품명	2015년도 관세할당수량	2015년도 관세율	
		1차세율	2차세율
내추럴 치즈(프로세스치즈 원료용)	63,000	무세	29.8%
옥수수	콘스타치용	상반기1,669,900 하반기1,504,600	무세 50% 또는 12엔/kg중에서 높은세율
	단일 사료용(원형 입자)	365,000	
	특정물품제조용(콘 플레이크, 에틸알 콜 또는 증류주 용)	상반기41,600 하반기50,600	
	기타용(콘그리츠, 기타과자용 등)	상반기54,600 하반기53,300	3%
맥아	상반기285,600 하반기266,600	무세	21.30엔/kg
무당코코아제조품(초콜렛제조용)	20,500	무세	21.3%
토마토퓨레/페이스트(토마토케첩등 제 조용)	37,600	무세	16%
파인애플 통조림	38,000	무세	33엔/kg

2. UR합의에 의해 관세할당제도 대상이 된 품목 (관세화 품목)

품명	2015년도 관세할당수량	2015년도 관세율	
		1차세율	2차세율
기타유제품	133,940	12%,12.5%, 21%, 25%,35%	21.3%+54엔/kg, 21.3%+114엔/kg, 21.3%+635엔/kg 21.3%+1,199엔/kg 23.8%+679엔/kg 23.8%+1,159엔/kg 29.8%+396엔/kg 29.8%+400엔/kg 29.8%+582엔/kg 29.8%+679엔/kg 29.8%+915엔/kg 29.8%+1,023엔/kg 29.8%+1,155엔/kg 29.8%+1,159엔/kg
탈지분유	74,973	무세,25%, 35%	396엔/kg, 425엔/kg, 21.3%+396엔/kg

				21.3%+425엔/kg 29.8%+396엔/kg 29.8%+425엔/kg
	학교 등 급식용	7,264	무세	396엔/kg, 425엔/kg,
무당연유		1,500	25%, 30%	21.3%+254엔/kg 25.5%+509엔/kg
유청 등	무기질을 농축한 유청	14,000	25%, 35%	29.8%+425엔/kg 29.8%+687엔/kg
	유청 및 조제유청 (배합사료용)	45,000	무세	29.8%+425엔/kg 29.8%+687엔/kg
	유청 및 조제유청 등(유아용조제분유 제조용)	25,000	10%	29.8%+400엔/kg 29.8%+425엔/kg 29.8%+679엔/kg 29.8%+687엔/kg 29.8%+1,023엔/kg
버터 및 버터오일		581	35%	29.8%+985엔/kg 29.8%+1,159엔/kg
잡두(팥, 완두콩, 잡두콩, 강낭콩 등)		상반기 28,700 하반기 35,500	10%	354엔/kg
전분, 이눌린 및 전분조제품		상반기 83,500 하반기 83,500	무세, 16%, 25%	119엔/kg
땅콩		38,200	10%	617엔/kg
구약감자		267	40%	2,796엔/kg
조제 식용기름	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것	11,550	25%	29.8%+1,159엔/kg
	기타	7,427		
누에고치 및 생사		798	무세	2,523엔/kg(누에고치), 6,978엔/kg(생사)

(주의) 옥수수, 맥아, 잡두 및 전분의 관세할당수량은 상반기(2015년4월-2015년9월), 하반기(2014년10월-2015년3월)의 정령수량

■ 시사점

□ 일본의 수입할당제도와 관세할당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
일본에는 「수입 할당(쿼터)제도」와 「관세할당(쿼터)제도」가 있습니다.

이 차이점은 어느 쪽이나 수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공통입니다만 「관세할당(쿼터)제도」는 일정범위를 넘은 수입에 관해서는 비싼 세율을 과세(수입 가능)-농산물해당, 「수입할당(쿼터)제도」는 일정범위를 넘은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 불가능-수산물해당

- 관세할당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출확대 전략수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중의 하나임. 우리 한국의 관세제도는 우리농산물 생산자가 보호를 받고 국제정세에 대응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근 FTA 등 무역자유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 국가 간의 협상이 중요한 과제로 보임.